

의안번호	2212409
의 퇴 인	허영 의원
회 답 일	2025.8.28.
추 계 번호	25B4583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1항) 4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제4장 및 제5장에 한정한다)에 가입할 수 있음(단서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고용보험법」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(이하 “사학연금법”)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「고용보험법」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¹⁾
- 개정안은 「사학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「고용보험법」을 적용하지 않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²⁾에 따른 사

1) 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4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립학교 사무직원(이하 “사립학교 사무직원”)의 경우에는 고용보험(제4장³⁾ 및 제5장⁴⁾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,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
- 첫째,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입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움
- 둘째,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
 - － 또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, 이직률, 이직일 기준 연령,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휴가급여 대상 자녀의 존재 여부 및 사용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2024년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약 32만명임

[표 1] 사학연금 가입자 수: 2020~2024년

(단위: 천명, %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교원	160	157	153	149	145	-2.4
직원	168	174	180	185	178	1.5
학교 및 학교경영기관	53	52	53	53	52	-0.3
병원직원	115	121	128	132	126	2.3
합 계	328	330	333	334	324	-0.3

주: 학교 및 재단 직원에 사학연금공단 직원 포함
 자료: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제70조의2(사무기구 및 직원)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, 그 설치·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·임용·보수·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,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.

3) 제4장은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임

4) 제5장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내용임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